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1-2호

발행일 : 2021. 10. 12. (화)

제391회 국회(정기회, 2021. 9. 1. ~ 9. 2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데이터 경제

나. 국가균형발전

다. 반부패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1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00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중 9월 28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8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 (2) 차량 중심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3)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일정한 경우 준공신고 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시점을 앞당긴 「전파법」 개정안, (4)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5)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때에는 형의 감면을 배제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들 수 있습니다.

29일 통과한 주요 법안은 (1)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시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정기회)의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5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법제사법위원회(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해련 의원 등 10인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4인
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등 14인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1인
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4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21인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1인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1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2인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의원 등 12인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7	외교통일위원회(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8	행정안전위원회(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등 12인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0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 등 10인
31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의원 등 2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3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44인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 의원 등 15인
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 등 15인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0인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2인
3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등 13인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의원 등 16인
4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2인
4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2인
4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2인
45	보건복지위원회(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6	국토교통위원회(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8인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4인
50	정보위원회(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등 10인
5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데이터 경제, 국가균형발전, 반부패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데이터 경제

개요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생산요소로 여겨집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혁신성장이며, 데이터 경제는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데이터 경제라는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합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p> <p>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 ‘데이터’ 정의 규정(안 제2조), 정부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시책 및 정부기관 권한과 책무(안 제4조, 제9조, 제10조 등), 데이터 자산 보호(안 제12조), 데이터 기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각종 지원(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안 제21조), 데이터거래사(안 제23조), 데이터 산업 전반의 기본 조성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안 제32조),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안 제34조)</p>	2021-09-2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기본 방향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지능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19.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17~)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18)를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22),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18)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18~)하는 동시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17~)이다.

관련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관계부처 합동 2017. 11. 30.

데이터 · 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추진배경

데이터와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
미래의 경쟁은 대규모 데이터 확보와 AI 역량강화가 핵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즉시 준비할 필요

비전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정책과제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체계적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개인, 기업, 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

(세계적 수준의 AI혁신 생태계 조성) AI 허브 구축(데이터셋, 알고리즘, 컴퓨팅파워 원스톱지원),
AI 기술력 제고, AI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AI 융합 촉진)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공간적 융합), 사회적 · 산업적 수요 확산(사업적 융합),
제도적 · 인적 융합

관련 : [데이터 · 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관계부처 합동 2021. 7. 14.

참고 자료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2. 24.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2.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2.

[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2021. 9. 28.

그동안 공공부문 데이터와 관련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입법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면밀히 분석, 계

속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 [\[보도자료\]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국회의원 조승래 2021. 9. 28.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31.

산업·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첨예한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정당한 이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 또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신이 축적한 데이터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할 때 안심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이처럼 각 주체를 데이터 경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신뢰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BO 브리핑」 2021. 3. 16.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 진단, 치료,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데,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업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검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마련, 혁신의료 R&D사업의 사업화 지원제도 보완 등이 요구된다.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 입법정책의견 2020. 12. 29.

제정안은 1) 개인데이터를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정의하여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2)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의 보호에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무력화를 초래하며, 3) ‘공시·공개’된 개인데이터에 관한 특례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4) 개인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하고,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이동권의 본질을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데이터 전송 수령주체를 국가가 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5)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 입법정책의견 2021. 1. 8.

제정안은 1)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2)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3)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나. 국가균형발전

각 정부마다 지역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인구·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8년부터 지속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9월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적 공감대에 초점을 맞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分院(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2021-09-28 (원안가결)
2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기부금 모금 및 접수 범위를 해당 지자체 주민 아닌 사람으로 한정(안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만 사용 제한(안 제10조), 고향사랑 기구제에 대한 주기적 조사, 연구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용 결과 등 공개(안 제12조), 기부·모금 강요시 처벌(안 제16조)	2021-09-28 (원안가결)
3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1호 신설).	2021-09-28 (원안가결)

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p><u>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u></p> <p>‘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p>	2021-09-29 (원안가결)
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p><u>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인구, 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도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p>	2021-09-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23.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과제목표

행안부·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주요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이하 생략)

[100대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과제목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주요 내용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이하 생략)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3대 전략 / 9대 핵심과제

(사람 -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공간 -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산업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자산화

관련 :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8. 2. 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21. 1. 29.

참고 자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2021. 2.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0.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2021. 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20.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2.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조속건립 적극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 9.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화)

밝혔다. (...)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 박무익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행정안전부 2021. 9. 28.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1호 2020. 3. 20.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 본원(分院)인 세종의사당 설치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본원(서울)이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첫째, 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소재하고, 둘째, 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 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7. 11. 21.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납부 또는 기부를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앞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기부금 제도 및 세액공제 제도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 공제로 야기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19. 9. 2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주민참여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 위원을 활용해야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아울러, 재정민주주의 및 재정책임성은 하나의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10. 31.

단순히 개별 사안이나 개별 법률의 개정을 넘어 계층과 공간의 결합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매년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수축사회의 도래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토기본법 등의 공간관련 법제의 재정비 혹은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공간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세대, 계층과 융합하여 공간을 재구축하고 이를 제도의 틀에 정착시킨다면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은 보다 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반부패

개요

반부패·청렴은 공공부문이 잘 기능하는 문제인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과 관련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정착되지 않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공정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의 9월 본회의에서는 OECD 반부패협약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p>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p> <p>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둬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p>	2021-09-2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 법무부)

과제목표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

주요 내용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 · 운영, '18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 ·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 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 소송제도 도입 · 시행

- '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 추진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18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 민관협의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19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 · 공정성 강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

목표

'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

주요과제

(함께하는 청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협력기반 마련, 공수처 등 반부패 관계기구 강화

(깨끗한 공직사회)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구축, 공공분야 '갑질' 관행 개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민관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투명한 경영환경)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내실화,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공익법인 투명성 향상

(실천하는 청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
화,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분야 부패 제거, 사회 각 분야 청렴 사회협약 확산

관련: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관계기관 합동 2018. 4. 18.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관계기관 합동 2021. 2. 2.

참고 자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6.

[대한민국 반부패백서](#) 국민권익위원회 2020. 10.

2018년 12월 이탈리아와 핀란드를 주심사국으로 한 4주기 이행점검에 대한 이행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주
요 권고사항으로는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검찰과 경찰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해외뇌물 목적의
부정회계 적극 수사, △정부기관 및 민간의 해외뇌물 적발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심사단은 한편, 한국의 공
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과,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
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OECD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2019년 12월 10일~13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4주기 점검 후 권고안에 대한 이행 여
부를 서면과 구두로 보고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해외뇌물 관련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법안과 감청(wiretapping) 수사가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진행 중임을 소개하였다.

['19년 제4차 OECD 뇌물방지 작업반회의 결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2019. 12.

OECD 뇌물작업반의 권고사항 및 후속검토 의제 (...)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 규제에 관한 권고) (...)
9. 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e. 법인에 적용되는 공
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902호\) 에 대한 검토의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안 의견서 2020. 2. 26.

불과 2년 정도의 공소시효 연장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입법 의도를 고
려한다면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의 공소시효보다 단기간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체제는 법인
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뇌물방
지법상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를 고려한다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공소시효와 법
인에 대한 처벌의 공소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최정호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jhc@jipyong.com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